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1117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3. 30.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8.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7. 8. 25. 접수 제786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C가 원고로부터 2000. 3. 4. 1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46453호로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2. ‘C는 원고에게 15,346,366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05.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6.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망 D의 사망, 상속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1) C의 부친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7. 7. 12.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E,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및 F이 있는데, 피고와 C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8.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7. 7.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8. 25.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치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남양주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2020. 9. 10.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은 C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인데, 이를 포기하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피고에게 모두 이전해 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채무에 대하여 몰랐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취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나 등기만 망인 명의로 마쳐놓은 것이다. C는 망인이 생전에 C의 가족들에게 증여한 돈,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지출한 돈을 고려하고, 자신이 2016. 4. 8.

G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망인과 피고가 대위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등기부상 명의인인 망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만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9. 10. 22. 전소유자 H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H이 망인과 피고 사이의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명의수탁자인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후 망인의 사망으로 C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상속하게 된 각 2/9 지분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로는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 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인 C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것은 원고를 포함한 C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여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2) 피고의 기여분 내지 C의 특별수익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기여분과 C의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의 기여분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의 기여분 산정에 관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관련한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의 특별수익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망인이 2016. 3. 3.경부터 2017. 5. 27.경까지 사이에 C의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합계 15,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돈은 C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C의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위 돈이 망인이 C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C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망인이 며느리 또는 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금전 지급의 시기와 규모, 부친이 며느리나 손녀에게 돈을 송금해 주는 등의 행위는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전 지급을 두고 망인이 C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고 쉽게 추단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1,000만 원의 대위변제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확인서에는 대위변제자가 피고 및 망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기여분에 의한 주장인지, C의 특별수익에 의한 주장인지도 불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각 2/9 지분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각 2/9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용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남양주시 대 169㎡

2. 위 1. 지상건물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건물내역 :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독주택

69.40㎡ 끝.